

[별첨1] 주식분할 상세내역

- 1) 주식(액면)분할의 목적 :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위한 거래활성화
- 2) 주식(액면)분할의 내용 : 보통주 1 주(액면가 500원)를 보통주 5주(액면가 100원)로 분할

구분		분할 전	분할 후
1주당 액면가액(원)		500	100
발행주식총수(주)	기명식 보통주	2,847,106	14,235,530
	기명식 우선주	-	-
	합계	2,847,106	14,235,530
자본금의 액(원)		1,423,553,000	1,423,553,000

- 3) 주식 분할 일정

구분	일정
주주총회 예정일	2024년 08월 16일
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	2024년 08월 29일 ~ 2024년 09월 19일
신주배정 기준일	2024년 08월 31일
신주(주식분할) 효력 발생일	2024년 09월 01일
신주권 상장 예정일	2024년 09월 20일

- 4) 단수주 처리방법 : 주식의 분할로 발생하는 1주미만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예정
- 5) 기타 사항
 - 상기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 - 기타 분할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[별첨2] 정관 신규대조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조 (사업의 목적)	<p>(생략)</p> <p>1. 소프트웨어 개발, 자문, 용역 및 제조, 공급, 유지보수업</p> <p>1.전기 전자 부품 및 소재의 설계, 개발, 제조, 판매업</p> <p>(신규추가)</p>	<p>(생략)</p> <p>1. 소프트웨어 개발, 자문, 용역 및 제조, 공급, 유지보수, 서비스업</p> <p>1.전기 전자 부품 및 소재의 설계, 개발, 연구, 제조, 판매업</p> <p>1. 하드웨어 관련 개발 및 제조, 판매</p> <p>1. 소형모듈원전(SMR) 설계, 건설, 운영 및 해체 관련 지식서비스업</p> <p>1. 소형모듈원전(SMR) 및 발전시설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</p> <p>1. 원자력 및 공학 관련기술 연구개발업</p> <p>1. 원전 설계, 건설, 운영 및 해체 관련 지식서비스업</p> <p>1. 방사성물질 운반, 저장 및 처분을 위한 용기 설계 및 제조</p> <p>1. 방사성물질 취급 관련설비</p> <p>1.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용기 설계 및 제조</p> <p>1. 방사능 모니터링장치 개발, 제조 및 판매업</p> <p>1. 방사선 계측기 및 의료장비 수출입업</p> <p>1.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설계, 제조, 판매 및 시공</p> <p>1.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관련 기계 수출입업</p> <p>1.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</p> <p>1. 폐기물 감용설비 제작업</p> <p>1. 폐기물 감용 서비스업</p> <p>1. 데이터처리 솔루션개발, 기술자문 및 용역</p> <p>1. 데이터웨어 하우스 구축 및 솔루션 개발 및 공급</p> <p>1. 플랫폼 개발 및 판매업</p>

제6조(1주의 금액)	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.	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.
제 8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	제 8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(생략)	제8조(주식 등의 전자등록) (생략)
제14조 (명의개서)	제 14 조 (명의개서)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.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.
제 16 조 (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)	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	(삭제)
제16조의 2(주주명부의 작성·비치)	(신설)	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		<p>②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 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
제19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	제14조,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	제8조, 제14조,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부칙	(추가)	이 정관은 2024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3] 임원선임 세부내역

▷ 이사선임 세부내역(案)

성명	생년월일	주요경력(현직포함)	최대주주와의 관계	체납사실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	추천인		최근3년간 거 래내역	부실기업 경영진여부	
이운장 (사내이사)	1969.09.20	2012. 08~현재 (주)오리온이앤씨 대표이사(창업) 2018.05~2020.03 (주)삼원테크 사외이사(코스닥) 2016.05~2019.04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협회장 2006.06~2012.04 (주)코네스코퍼레이션 부장	-	-	-
	이사회	2006.01~2006.06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2001.12~2005.10 독일 원자력연구원 FZK 연구원 1998.03~2001.11 기초전력연구원 연구부장	-	-	-
정민영 (사내이사)	1983.08.30	2024.05 ~ 현재 휴림네트웍스(주) 이사 대우			
	이사회				